

문서번호	투자유치과-5279	주무관	투자관리팀장	투자유치과장	산업경제정책관	경제진흥실장
결재일자	2012.6.21.	김상록	송광남	김용남	한국영	06/21 권혁소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			

「서울특별시 금융중심지 조례」 제정관련 유관기관·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



2012. 6

경제진흥실
(투자유치과)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금융기관 종사자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■ (금융유관기관, 금융전문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타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원 의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금융위원회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「서울특별시 금융중심지 조례」 제정관련 유관기관·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

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서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추진 중인 「서울특별시 금융중심지 조례」 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 개최개요

- 일 시 : 2012. 6.14(목) 14:00~ 15:30
- 장 소 : 경제진흥실 회의실
- 참 석 : 8명
 - 서울시(3) : 투자유치과장, 금융정책자문관, 투자관리팀장
 - 시의회(1) : 재정경제위원회 강상원 전문위원
 - 유관기관(1) : 금융위원회 임형준 사무관
 - 금융전문가(3) : 노무라증권 최광렬 부사장, 크레디 아그리콜 김춘기 전무, AIG KRED 이성원 이사
- 회의순서
 -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보고(10')
 -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(80')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서울 금융중심지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
 - ※ 보조금 지원내용

지원 항목	지원규모	지원한도
사업용설비 설치자금	해당 소요 자금의 20%이내	15억원
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	5인 초과 1인당 월100만원	최대 6개월, 기관당 2억원
 -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

조례 일반사항

-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원의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데 의의
- 조례제정 이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 검토 필요
 - 금융중심지 지정('10.1)부터 조례 제정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했던 금융기관들까지로 지원대상 확대

추가 인센티브 발굴

-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
 -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 보조금 등 외국인투자조례과 중복되는 항목의 인센티브보다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발굴 필요
- 실효성이 낮은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신 금융인력양성 사업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검토 필요
 - 지원대상인 창업 등 신규진입 금융기관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만큼 직원교육보다는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채용을 선호함

보조금 지원대상

- 국내 기진출 외국 금융사들의 여의도 이전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국가에서 금융중심지로 여의도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, 국내외 금융기관 다수가 도심지역(CBD)에 위치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육성에 한계로 작용
 -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우선 금융기관 집적이 이뤄져야 하며, 관련 금융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마켓 리더 역할이 가능한 우수 금융기관 이전이 필요
 - 이를 위해 국내 기진출 외국 금융사들의 여의도 이전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큼

- 지원대상인 금융지원서비스기관의 범주 구체화 등 보완
 - 현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인 금융지원서비스기관으로 법무, 회계, 세무,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규정
 - 금융지원서비스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과 관련없는 기관에의 지원이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상범위 검토보완 필요

보조금 지원기준 및 금액

- 금융기관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요건(인원) 완화 검토 필요
 - 외국 금융사가 국내진출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
 - ※ 사무소(2~4명설치, 시장조사 → 지점설치(5~10명, 투자 확대
 -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진출 초기의 소규모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안의 인원요건을 완화해야 함
 - ※ 지원대상 요건 : 상시고용 10인 이상(고용·교육훈련 : 5인 초과 고용시)
-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한도확대 검토 필요
 -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및 금융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나, 단기적으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수의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

기타 사항

- 금융 인프라 및 금융자원 확충을 위한 장기적·근본적 고민 필요
 -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서울의 최우선 과제는 경쟁도시보다 부족한 금융 인프라(Infra)와 자원(Resource)을 조성하는 것임
 - 단기적인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좀더 큰 틀 안에서 근본적인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

- 지역본부를 단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 마련
 - 지역본부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산업 인력,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유치대상
 -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일부 기능을 가진 지역본부부터 금융중심지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
 - ※ 외국금융기관은 리스크 감소를 위해 지역본부를 기능별로 여러 지역에 분산 운영
- 지역본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보완 필요
 - 지역본부는 10~20명 규모부터 100명 이상까지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지역본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준비가 필요

III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

- 참석자 수당지급 : 400천원
 - 지급내역 : 100,000원 × 4명 = 400,000원
 - 예산과목 : 투자유치활성화,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,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201-01)
- 향후계획
 - '12. 7월 : 조례제정 간담회(2차) 개최
 - '12. 7월 : 조례 입법계획 수립
 - '12. 8월 : 조례 입법예고
 - '12. 9월 :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
 - '12. 10월 : 시의회 의결 및 공포
 - ※ 제240회 임시회 : 10.4(목) ~ 10.13(토)

붙임 : 간담회 회의 자료 1부.
참석자 명부 1부. 끝.